

## 4 부채 / 채무 / 채권

### 4-1. 통합부채 현황

☐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.

▶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('19.10. 예정)

### 4-2.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

☐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(퇴직금, 미지급금, 보관금 등)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'4-6. 지자체 채무 현황'의 지방채무와 '4-3. 지방공기업 부채' 중 직영기업(공기업 특별회계)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금정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7년	2018년	증 감	비고
자산(A)	1,081,684	1,120,719	39,035	
부채(B)	8,893	13,106	4,213	
자산대비부채비율 (B/A*100)	0.82	1.17	0.35	

▶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

▶ 부 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

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
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
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권 및 미지급금 등

▶ 자 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
### 4-3.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

☐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
#### 4-4.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

■ 우리 금정구의 출자·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2017년				2018년			
	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C)	부채비율 (B/C)×100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C)	부채비율 (B/C)×100
합 계		739	19	720	2.62	978	32	946	3.41
출연 기관	소 계	739	19	720	2.62	978	32	946	3.41
	금정문화재단	739	19	720	2.62	978	32	946	3.41

#### 4-5. 우발부채 현황

■ 우발부채는 **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**를 의미하며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▶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('19.11. 예정)

#### 4-6. 지자체 채무 현황

☐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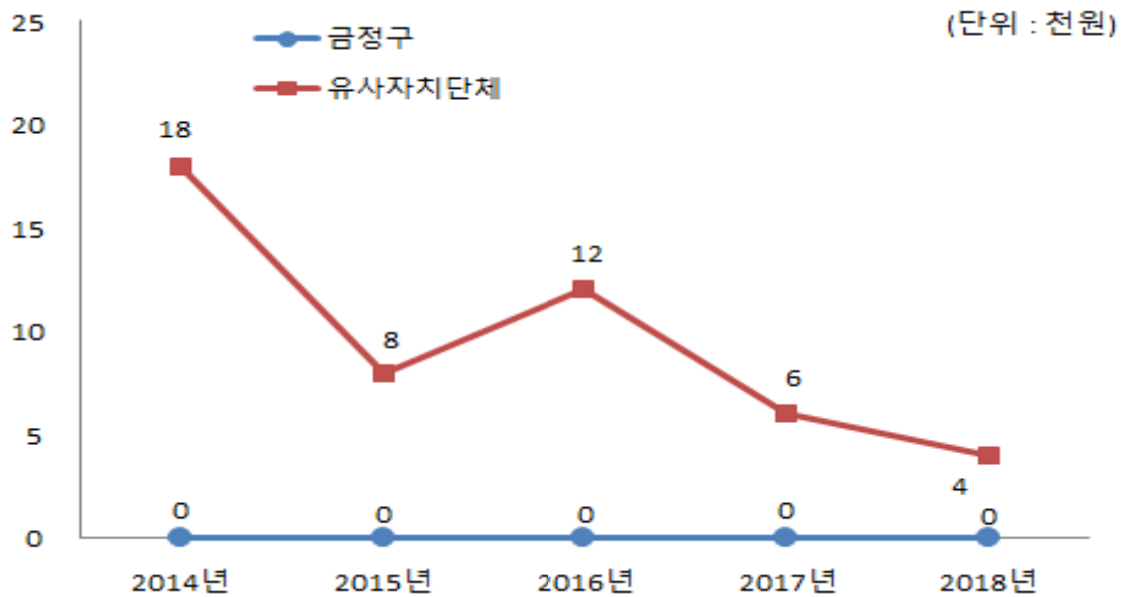
#### ❖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4	2015	2016	2017	2018
채무현황	0	0	0	0	0
인구수	249,856	246,026	244,624	244,469	242,956
주민 1인당채무(천원)	0	0	0	0	0

※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

####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



#### 4-7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4	2015	2016	2017	2018
지방채발행한도액(A)	1,800	1,900	2,000	2,100	2,300
발행액(B)	0	0	0	0	0
발행비율(B/A*100)	0	0	0	0	0

- ▶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,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
- ▶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  - \* 별도한도액 =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+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+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
  - \*\*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=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% 이내이고,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‘공공 및 기타대출’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

#### 4-8. 일시차입금 현황

-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.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
#### 4-9.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

-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(BTL, BTO 등)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. 우리 금정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

#### 4-10.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· 이행현황

-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'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, '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, '19~'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▶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('19.11.예정)

#### 4-11. 보증채무 현황

- ☐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
#### 4-12. 채권 현황

- ☐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(융자)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. 우리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17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18년도 현재액 (A+B)	
		계 (B=C-D)	발생액(C)	소멸액(D)		
합 계	4,523	△721	450	1,171	3,802	
일 반 회 계	3,508	△309	428	737	3,199	
특별회계	소 계	626	△412	22	434	214
	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	380	△380	0	380	폐지
	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246	△32	22	54	214
	지하수관리특별회계	0	0	0	0	0
	주차장특별회계	0	0	0	0	0
	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0	0	0	0	0
	재정비축진 특별회계	0	0	0	0	0
	기반시설 특별회계	0	0	0	0	0
	기금회계	소 계	390	0	0	0
사회복지기금 (사회복지계정)		0	0	0	0	0
사회복지기금 (노인복지계정)		0	0	0	0	0
사회복지기금 (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)		390	0	0	0	390
양성평등기금		0	0	0	0	0
식품진흥기금		0	0	0	0	0
재난관리기금		0	0	0	0	0
육외광고정비기금		0	0	0	0	0

▶ '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

※ 2017. 9. 29.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

❖ 채권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4	2015	2016	2017	2018
채권현황	4,394	4,368	4,730	4,523	3,802

▶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

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

